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이의신청 대상 · 방법

□ **(이의신청 대상)**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④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⑤ **(담당자 착오)**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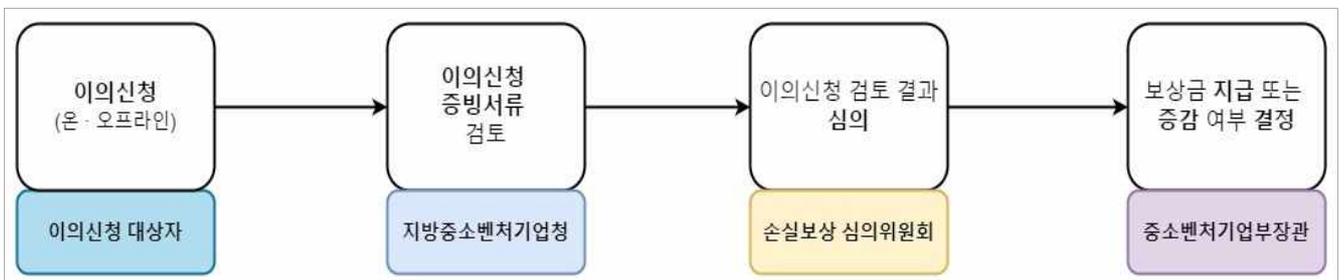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붙임1】** 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붙임2】** 첨부하여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붙임3】**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 ※ **(주의)** ▲증빙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보완 불응,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 **(주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2. 이의신청 절차 · 기간

- **(이의신청 절차)**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 ① **(이의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② **(검토)**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보상금액에 대한 전문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 ③ **(심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④ **(결정)**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의신청 기간) '21.12.22.(수)부터 접수*

* ▲보상 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3. 유의사항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붙임2】참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청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확인보상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확인요청을 거친 이후에만 이의신청 가능

4. 이의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손실보상 처리절차**

1. 손실보상의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신속보상은 국세청 과세정보 및 지자체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증빙 제출없이 손실보상금을 산정·지급받는 절차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IV.1.)
3. 확인보상은 신청인이 신속보상 절차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지급받는 절차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IV.2.)
4.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확인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액·미지급·환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지급받는 절차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VI.)
- 5. 신속보상 절차에서 산정된 보상금 지급에 동의 시 확인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보상금 지급 동의

신속보상 절차에서 산정된 보상금 **금 (자 필 로 기 재)**원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기업규모가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한 사업자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평균매출액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의신청서*(필수),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소기업 초과" 또는 "소기업 판단 불가" 적시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 >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7.12.31. 이전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18.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근거 법령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이하 같음)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18.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의신청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일반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이 '18.1.1.~'18.6.3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18.7.1.~'18.12.31.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19.1.1.~'19.6.3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19.7.1.~'19.12.31.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20.1.1.~'20.6.3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20.7.1.~'20.12.31.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간이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이 '18.1.1.~'18.12.31.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고기간"이 '19.1.1.~'19.12.31.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고기간"이 '20.1.1.~'20.12.31.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이 '18.1.1.~'18.12.31.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 "과세기간"이 '19.1.1.~'19.12.31.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 "과세기간"이 '20.1.1.~'20.12.31.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7.12.31. 이전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18.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8.1.1.부터 ‘18.12.31. 사이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19.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19.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의신청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일반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이 ‘19.1.1.~’19.6.3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19.7.1.~’19.12.31.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20.1.1.~’20.6.3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20.7.1.~’20.12.31.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간이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이 ‘19.1.1.~’19.12.31.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고기간”이 ‘20.1.1.~’20.12.31.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이 ‘19.1.1.~’19.12.31.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 “과세기간”이 ‘20.1.1.~’20.12.31.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8.1.1.부터 ‘18.12.31. 사이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19.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19.1.1.부터 ‘19.12.31. 사이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20.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20.1.1.부터 ‘20.12.31.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의신청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일반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이 ‘20.1.1.~’20.6.3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신고기간”이 ‘20.7.1.~’20.12.31.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간이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이 ‘20.1.1.~’20.12.31.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이 ‘20.1.1.~’20.12.31.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19.1.1.부터 ‘19.12.31. 사이인 법인사업자
 ≡ “사업연도”가 ‘20.1.1.부터 ‘20.12.31.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0.1.1.부터 ‘21.9.30. 사이인
 법인사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손익계산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손익계산서일 것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
- 이의신청자의 회사성립연월일(법인등기부 기준)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

이의신청자의 회사성립연월일	회계기간
‘20.1.1.~’20.9.30.	‘20.10.1.~’21.9.30.
‘20.10.1.~’21.8.31.	회사성립연월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21.9.30.
‘21.9.1.~’21.9.30.	회사성립연월일부터 ‘21.9.30.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붙임4】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미이행” 적시

○ ‘19년 대비 ‘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매출액 증가” 적시

□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매출액 정정” 적시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매출액 정정" 적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 개업연월일에 따라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기간의 자료를 제출

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 시 과세기간
~'18.12.31.	'19.1.1.~'19.12.31.
'19.1.1.~'20.11.30.	'20.1.1.~'20.12.31.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산출 시 반영되는 소득, 필요 경비, 손금(損金)의 액수 또는 구성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경정된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신고자료(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영업이익률 등 정정" 적시

- "경정된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과세신고 및 기장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다름(해당하는 유형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과세신고 유형	기장 유형	증빙서류	근거 법령
기장신고	복식부기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재무제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간편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기장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 종합소득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위해 새로 기장한 자료(하기 요건 충족 필요)를 의미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위해 새로 기장한 자료**”의 요건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2호에 따른 **표준재무제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1호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경정청구**(같은 법 제45조의2)를 목적으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

◇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

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	회계기간
~'18.12.31.	'19.1.1.~'19.12.31.
'19.1.1.~'20.12.31.	'20.1.1.~'20.12.31.
'21.1.1.~'21.9.30.	해당사항 없음(사유 :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

- “**경정된 법인세 관련 신고자료**”는 다음 증빙서류를 의미

- **표준재무제표***(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위해 새로 기장한 자료(하기 요건 충족 필요)를 의미

<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위해 새로 기장한 자료**”의 요건 >

◇ 「법인세법」 제82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표준재무제표**

◇ **법인세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경정청구**(같은 법 제45조의2)를 목적으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

◇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

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	회계기간
~'18.12.31.	'19.1.1.~'19.12.31.
'19.1.1.~'20.12.31.	'20.1.1.~'20.12.31.
'21.1.1.~'21.9.30.	해당사항 없음(사유 :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

※ (주의) 국세청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표준재무제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신고자료의 귀속연도는 이의신청자 개업시점에 따라 다름

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과세신고자료
~'18.12.31.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19.1.1.~'20.12.31.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21.1.1.~'21.9.30.	과세신고자료 없음('22년 예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개인사업자 또는 '21년 개업한 사업자*로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21.1.1.~'21.9.30. 사이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1.1.1.~'21.9.30.인 법인사업자를 의미

☞ ▲이의신청서*(필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인건비·임차료 증빙서류** (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영업이익률 등 정정" 적시

** ▲손익계산서와 ▲인건비·임차료 증빙서류는 함께 제출 필수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증빙서류를 의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의 요건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것
-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
- ◇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

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	회계기간
~'18.12.31.	'19.1.1.~'19.12.31.
'19.1.1.~'20.12.31.	'20.1.1.~'20.12.31.
'21.1.1.~'21.9.30.	개업한 날부터 '21.9.30.까지

- “인건비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의미(모두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 필수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손익계산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른쪽 상단의 지급연월 기준

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간
~'18.12.31.	'19.1.1.~'19.12.31.	'19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총 12개월치)
'19.1.1.~'20.12.31.	'20.1.1.~'20.12.31.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총 12개월치)
'21.1.1.~'21.9.30.	개업한 날부터 '21.9.30.까지	개업한 달부터 '21년 9월까지

- ◇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의 경우, 손익계산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왼쪽 상단의 고지연월 기준

**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 의무가 없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4대사회보험 산출내역서 기간
~'18.12.31.	'19.1.1.~'19.12.31.	'19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총 12개월치)
'19.1.1.~'20.12.31.	'20.1.1.~'20.12.31.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총 12개월치)
'21.1.1.~'21.9.30.	개업한 날부터 '21.9.30.까지	개업한 달부터 '21년 9월까지

- “임차료 증빙서류”는 다음 증빙서류를 의미(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출내역 모두 제출)

- ◇ 손익계산서 회계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면,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로 간주

- ◇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출내역(다음 중 택일)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등(명칭은 은행마다 다름)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

*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와 임차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붙임5】 , ▲시설분류확인서**(해당자만 필수, 시·군·구 발급)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이행 일수 정정" 적시

** **보상 대상 기간**(21.7.7~9.30)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후** 지자체가 **모두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도 제출해야 해당 사실 **확인 가능**

- "시설분류확인서"는 보상 대상 기간(21.7.7~9.30.)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사업자만 해당**

※ **▲변경 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변경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시설분류 정정" 적시

□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붙임6】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 적시

□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이의신청서*(필수), ▲이의신청 소명자료**(필수)

* **(이의신청 사유)** 손실보상금 환수

** 소명자료 검토 이후, 필요시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담당자 착오)**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①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 (주의) 상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보상금 동의 철회서를 허위 발급받아 손실보상금 수급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7조)·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이의신청서*(필수), ▲보상금 동의 철회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붙임기】**,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자체 담당자 착오로 잘못 동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적시

-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증빙서류*
매출액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된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 ■ 인건비·임차료 증빙서류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 (필요시) 기존 영업신고증·등록증·허가증
시설분류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만 모두 제출하면 됨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 신청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의신청(다음중 택일) : [] 손실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 금액, []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
[] 손실보상금 환수

상세내용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지역별 시설분류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서울중로시설-00001))

시설분류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시설 유형	※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입		

2021.7.7.일부터 9.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분류를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명의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지역별 방역조치 이행 시설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서울종로이행-00001))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시설 유형	※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입	
방역조치 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방역조치 이행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 방역조치 기간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해당되는 날짜를 모두 작성

2021.7.7.일부터 9.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명의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지역별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서울종로정정-00001))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시설 유형	※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입	
방역조치 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방역조치 위반일(기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방역조치 위반일(정정)	집합금지	영업제한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21. . . ~ '21. . .(00일), '21. . . ~ '21. . .(00일), ⋮ (총 00일간)

※ 방역조치 위반기간과 위반일은 해당되는 날짜를 모두 작성

2021.7.7.일부터 9.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명의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일자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지급 일자	
지급된 보상금 총액	금 □억 □천□백□십□만 □천□백□십원 정		
신청·지급 철회 동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금이 신청·지급되었으므로 보상금 신청·지급 철회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신청인에 대해 지자체 신청·접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금이 신청·지급된 바,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 신청된 보상금 신청과 지급 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명의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